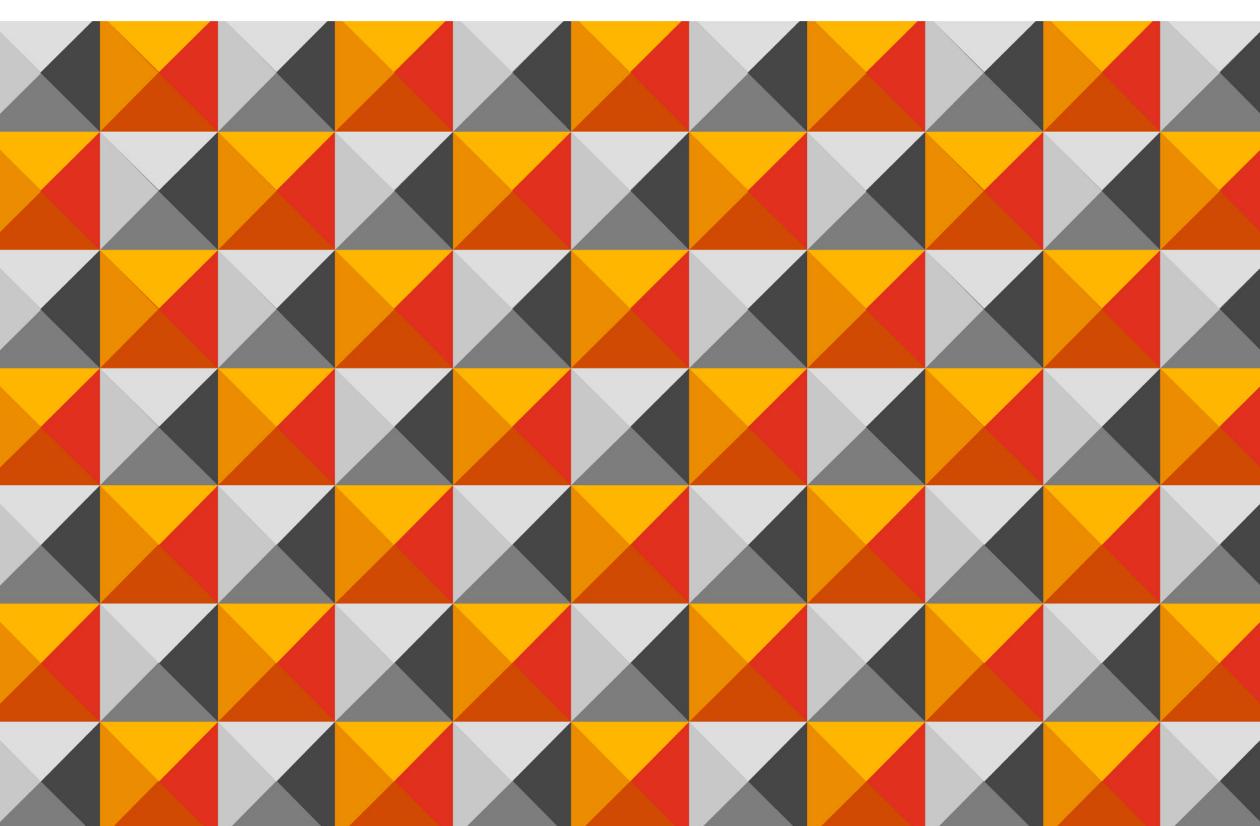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제·개정회계기준 실무가이드 2021

August 2021



목차

| | |
|---|----------|
| 도입 | 2 |
| 개정 기준서 | 3 |
| PSAK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개정 – 사업의 정의 | 3 |
| PSAK 55, PSAK 60, PSAK 62, PSAK 71 and PSAK 73 개정 – 이자율 지표 개혁 (2 단계)..... | 4 |
| PSAK 73 '리스(Lease)' 개정 – 임차료 할인 관련 | 6 |
| 2021년 연차개선 | 8 |
| 별첨—다가오는 요구사항 | 9 |

도입

동 발간물은 2021년부터 효력을 가지는 인도네시아회계기준("IFAS"; Indonesi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의 신규 제·개정사항에 대한 실무가이드입니다. 동 발간물은 기업들이 이러한 기준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어 향후 보고기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고 요구사항 변경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회계기준위원회 ("DSAK-IAI")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는 신규 기준서로 발표한 사항은 없으며 여러가지 개정 사항만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DSAK-IAI는 이자율지표 개혁(2단계)에 관한 PSAK 55, 60, 62, 71, 73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DSAK-IAI는 2021년 6월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할인 등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련한 개정사항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임차료할인 회계처리에 대한 범위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은 2019년 DSAK-IAI에 의해 발표된 PSAK 22의 사업의 정의와 관련된 개정사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해입니다.

IFAS 이외 사항으로, 인도네시아샤리아회계기준위원회("DSAS-IAI")에 의해 발행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부 사항이 존재합니다. 신규 샤리아회계기준인 PSAK 112, '기부금회계(Accounting for endowment)'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PSAK 107, '이자라회계(Ijarah Accounting)' 개정사항 및 PSAK 110, '수숙 회계(Susuk Accounting)'와 PSAK 111, '와드 회계(Wa'd Accounting)'에 대한 연차개선사항도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샤리아회계기준에 대한 업데이트는 동 발간물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2017년 5월, IASB는 보험발행자의 현행 실무 일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해 소급적용되는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을 공표하였습니다. 2020년 6월, IASB는 IFRS17의 최종 개정사항을 공표하였고, 적용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DSAK-IAI도 동 기준서의 도입을 비준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조기도입이 허용됩니다.

동 실무가이드는 다가오는 연차의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별첨 참조).

개정 회계기준서

PSAK 22, ‘사업결합 (Business Combination)’ 개정 – 사업의 정의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취득이 ‘사업’으로 고려되기 위해서는, 투입물(input)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유의적으로 산출물(outputs)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process)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개정사항은 투입물 및 실질적인 과정이 존재할 때 이를 평가하는 개념체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합니다(산출물을 아직 창출하지 않은 사업초기 단계의 기업을 포함). 산출물 없이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인력(organised workforce)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산출물(Outputs)’의 정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투자수익이나 기타수익의 창출에 국한되며, 원가감소 또는 기타 경제적효익의 형태로 직접 수익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보다 정교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시장참여자가 미충족된 요소를 대체할 수 있거나, 취득한 활동과 자산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한 총자산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비슷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취득이 아니라고 간주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테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영향

이러한 사업의 정의에 대한 변경사항은 모든 산업(특히 부동산업, 제약업, Oil 및 Gas업)에 걸쳐 더 많은 취득이 자산(asset)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처분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영향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업결합과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의 차이점은, 다른 무엇보다 영업권(goodwill)의 인식, 조건부대가(contingent consideration)의 인식 및 측정, 거래 원가의 회계처리, 그리고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사업결합 또는 자산취득이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하는 첫 연차보고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되나, 조기적용 시에는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PSAK 55, PSAK 60, PSAK 62, PSAK 71, 그리고 PSAK 73 개정 – 이자율

지표 개혁 (2 단계)

경과규정: 소급 적용

이슈

DSAK는 IBOR 개혁 효과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2 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에 발표된 1 단계 개정에서는, IBOR 개정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 회계처리 요구사항들의 관계들의 적용에 관한 한시적 예외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1 단계 예외사항'). 2020년 12월 16일 발표된 2 단계 개정에서는 대체적 지표 등 개혁의 실제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의 성격

- IBOR 개혁의 결과에 따른 계약 현금흐름 결정 근거 변화에 대한 회계처리
개정사항은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적용하는 기업에게 IBOR 개혁의 결과에 따라 계약 현금흐름 결정 근거 변화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함에 있어 PSAK 71 문단 B5.4.5의 지침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즉각적인 손익은 인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 실무적 간편법은 오직 동 변화 및 IBOR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에만 적용가능하며, 새로운 근거는 기준의 근거와 경제적으로 동질적이어야 합니다. PSAK 73 역시 IBOR 개혁의 결과로 미래 리스료의 결정 근거를 변화시키는 리스변경(lease modifications) 회계처리에 리스이용자가 유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위험회피관계에서 비 계약적으로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1 단계 예외사항의 종료일

영향

2 단계 개정은 비 계약적으로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1 단계 예외사항의 적용을, 비 계약적으로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시점 또는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에 전진적으로 중단할 것을 기업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험 구성요소에 대한 1 단계 개정에 대한 정확한 종료일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일시적 예외

2 단계 개정은 IBOR 개혁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정 PSAK 50 또는 PSAK 71의 위험회피 회계처리 요구사항의 적용에 따른 위험회피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일시적 예외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지정 및 위험회피 문서화 변경사항 | 1 단계 예외사항의 적용이 중지될 때, 기업은 해당 보고기간 말까지 IBOR 개혁에 따라 요구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위험회피 문서화 내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정은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 금(cash flow hedge reserve)에 누적된 금액 | 위험회피 문서화 내의 위험회피 대상 기술내용을 변경할 때,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적액은 미래 현금흐름 결정에 대한 대체적 지표의 기초로 간주됩니다. |
| 소급적 효과성 평가 (IAS 39 한정) | 누적적인 위험회피 관계의 소급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기업은 1 단계 개정에서 제공되었던 소급적 효과성 평가 예외사항을 중지할 때, 위험회피 대상 및 위험회피 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누적액을 개별 위험회피에 기초하여 0(zero)으로 재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 항목 집합 |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 관계를 수정할 때, 위험회피 대상들은 위험회피된 이자율 지표에 기초해 하위 항목으로 배부되며, 각 하위항목에 대한 이자율 지표는 회피된 위험으로 지정됩니다. |
| 위험 구성요소 -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한 요구사항 | 지정일에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비 계약적으로 특정된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이자율 지표의 경우, 최초 지정일로부터 24 개월 이내 기간에 기업이 합리적으로 충족을 기대하는 때에는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4 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이자율 지표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위험 구성요소는 합리적으로 측정 가능할 것이 요구됩니다. |

IBOR 개혁과 관련된 추가적인 PSAK 60 공시

개정사항은 다음 공시를 요구합니다: (i) 그 진행상황 및 전환으로부터의 위험 등, 기업이 대체 이자율 지표로의 전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 (ii) 아직 전환되지 않은 파생상품 및 비파생상품을 중요한 이자율 지표에 따라 구분한 양적 정보; 그리고 (iii) IBOR 개혁으로 인한 위험관리전략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

시행일 및 경과규정

동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조기도입이 허용됩니다.

PSAK 73 개정 – 임차료 할인 관련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임차료 할인은 많은 지역에서 계속되는 COVID-19의 영향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인은 임차료 면제나 유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미래 리스료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PSAK 73은 이러한 임차료 할인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DSAK는 리스이용자(리스제공자 제외)가 COVID-19와 관련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는 PSAK 73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2020년 5월 개정사항').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조건이 속하는 기간의 임차료 할인 등을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0년 5월 개정사항에서의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이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하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1.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2. 리스료 감면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3.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2021년 3월 31일, 지속되는 COVID-19 상황하에, DSAK는 상기 조건 2번의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추가적인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2021년 3월 개정사항').

만약 리스이용자가 2020년 5월 개정사항에서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면, 2021년 3월 개정사항을 사용하여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상황 하에서의 모든 리스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2020년 5월 개정사항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가능한 임차료 할인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1년 3월 개정사항에서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1년 3월 개정사항은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며, 개정사항 최초 적용의 누적적 효과를 리스이용자가 동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의 수정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효과 및 대상

지속되는 COVID-19 상황 하에서 많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많은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을 득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이용자가 2020년 5월 개정사항으로 인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리스이용자가 적용 가능한 임차료 할인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 회계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다면,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1년 3월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조기도입이 허용됩니다 – 또한 2021년 3월 31일 현재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도 포함됩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기준에 2020년 5월 수정사항에서 허용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리스이용자가 2021년 3월 개정사항을 발행 즉시 적용할 필요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 연차개선

다음 표에서 PSAK의 유지 및 개선의 일환으로 발표된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시작되는 연차기간에 유효한 PSAK 연차개선의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AK 연차개선은 기본적으로 보다 명확한 회계처리를 위한 좁은 범위의 개정사항이며, 이에 따라 기존의 원칙 또는 신규 원칙에 대한 중요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 제목 | 주요사항 |
|--|---|
|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 문단 123의 경영진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일부 개정 |
| PSAK 13, '투자부동산(Investment property)' | 문단 75(b)의 공정가치모형 공시에 관한 내용 삭제 |
| PSAK 48, '자산손상(Impairment of assets)' | 문단 4의 자산손상 범위에 대한 개정. 이에 따라 IAS 36 문단 4(a)와의 차이점이 제거됨 |
| PSAK 66, '공동약정(Joint arrangement)' | 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에 참조되는 문단 25, PP11, PP33A(b)와 그 주석, C12, 그리고 C14 개정 |
| ISAK 16, '민간투자사업(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 | PSAK 7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 with customer)'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일부 사례 문단 개정 |

별첨—다가오는 요구사항

| 제목 | 주요 요구사항 | 시행일 |
|---|---|-----------------------|
| PSAK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개정 – 재무보고 개념체계 참조 | 재무보고 개념체계 참조를 업데이트하고, PSAK 5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및 해석서 제 30호의 개정으로 인해 동 적용범위 내의 부채 및 우발부채 인식 예외사항을 추가하기 위해 PSAK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의 일부사항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어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 PSAK 5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개정 – 손실부담계약 : 이행원가 | PSAK 57 개정사항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 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손실부담계약으로부터 별도의 충당금을 인식하기 이전에, 기업은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된 자산에 발생한 손상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 2020년 연차개선 | 연차개선사항은 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PSAK 69, '농림어업(Agriculture)' 그리고 PSAK 73, '리스(Leases)'의 사례에 대한 일부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 PSAK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는 권리에 따라 부채의 유동-비유동을 분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부채의 결제에 PSAK 1이 참조될 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 PSAK 16, '유형자산(Fixed Assets)'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 동 개정사항은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순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할 때 기업은 자산의 기술적, 물리적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서 상 '시험'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산의 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동 평가와 무관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 | 기업은 회사의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산출물이 아닌 항목의 금액 및 원가를 별도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
| PSAK 74,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 동 기준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타 업종 비교가능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 2025년 1월 1일, 조기 적용 허용 |

한국 데스크 연락처

Lok Budianto 록 부디안토

+62 21 5099 2901 (ext. 81610)
lok.budianto@pwc.com

Taehun Jung 정태훈

+62 21 5099 2901 (ext. 81449)
taehun.jung@pwc.com

Inhyuk Park 박인혁

+62 21 5099 2901 (ext. 83600)
inhyuk.park@pwc.com

For professional accounting advice, please contact:

Djohan Pinnarwan

+62 21 5099 2901 (ext. 82299)
djohan.pinnarwan@pwc.com

Irwan Lau

+62 21 5099 2901 (ext. 82016)
irwan.lau@pwc.com

Jumadi Anggana

+62 21 5099 2901 (ext. 81990)
jumadi.anggana@pwc.com

Jasmin Maranan

+62 21 5099 2901 (ext. 81619)
jasmin.m.maranan@pwc.com

Elina Mihardja

+62 21 5099 2901 (ext. 83615)
elina.mihardja@pwc.com

Ponco Widagdo

+62 21 5099 2901 (ext. 83322)
ponco.widagdo@pwc.com

Ivina Hartopo

+62 21 5099 2901 (ext. 83209)
ivina.hartopo@pwc.com

Andri Effendi

+62 21 5099 2901 (ext. 81525)
andri.effendi@pwc.com

Andi Harun

+62 21 5099 2901 (ext. 90392)
andi.harun@pwc.com

PwC Indonesia

WTC 3

Jl. Jend. Sudirman Kav. 29-31

Jakarta 12920

Indonesia

T: +62 21 50992901 / 31192901

F: +62 21 52905555 / 52905050

Pakuwon Center

Tunjungan Plaza 5, 22nd Floor, Unit 05

Jl. Embong Malang No. 1, 3, 5

Surabaya 60261

Indonesia

T: +62 31 99245759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PwC Indonesia is comprised of KAP Tanudiredja, Wibisana, Rintis & Rekan, PT PricewaterhouseCoopers Indonesia Advisory, PT Prima Wahana Caraka, PT 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 and Melli Darsa & Co., Advocates & Legal Consultant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and all of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Indonesian member firm of the PwC global network, which i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PwC Indonesia.

© 2021 KAP Tanudiredja, Wibisana, Rintis & Rekan.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